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와 감사인 대응

Additional Disclosure of Consolidated Audit Details and Auditor Response

윤용석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Yongsuk Yun(hwantasi@hnu.kr)

요약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와 감사인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간 관계를 분석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시간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결감사내용의 추가공시가 유용한 정보제공 유인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추가공시 정보와 감사보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감사보수에 책정하는 감사위험의 측면에서, 연결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연결감사위험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행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실시내용 정보가 구별되어 공시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학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대한 공시가 감사인의 유용한 정보제공유인에 기반함을 실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중심어 : | 외부감사실시내용 | 연결감사보고서 | 연결감사 | 감사시간 | 연결재무제표 |

Abstract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dditional disclosure information of external audits details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 hours, and audit fe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listed companies that disclos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4 to 2016 are as follows. First, the additional disclosure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xternal aud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udit hours of the auditor.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dditional disclosure of the consolidated audit information is based on the incentiv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f auditor. Second, the audit fees of the auditors for additional disclosures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his suggests that, the additional disclosure of the consolidated audit practice is not based on the auditor's perception of the audit risk. This study provides that information on the external audit details of audit reports and consolidated audit reports is distinguished and disclosed,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researcher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by demonstrating that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 external audit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s based on the auditors' incentiv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 keyword : | External Audit Details | Consolidated Audit Report | Consolidated Audit | Audit Hours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

I. 서론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시한 기업의 감사인 대응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개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비교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수행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공시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기존 연구들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다르게 공시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2]. 또한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 감사인이 감사시간 투입과 감사보수 책정을 통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결감사수행내용의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정확함 정보 제공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에 대한 공시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사실상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2011년 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동일한 연결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가진 지배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지배기업을 담당하는 감사인 역시 지배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를 각각 수행하여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를 담당하는 감사인은 종속기업의 감사위험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연결감사인이 검증해야 할 규정 및 공시항목들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노력이 증가할 수 있다[3].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감사인이 연결감사업무수행내용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수행되지 않았기에 규제당국이나 정보이용자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대응 행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4년 외감법 개정 이후 감사보고서에 감사에 투입한 인원, 시간, 자세한 실시내용 등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별도재무제표 감사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구별하지 않고 기재하라는 시행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무산되었다[1].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감사실시내용이 동일함을 공시정보의 한계점으로 제시했고[1][2], 관련 자료를 사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4].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이 다르게 공시되고 있음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차별성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동일하게 공시됨을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세칙에 따라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실시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공시하는 것이 가능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업들의 공시정보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규제당국에게도, 정보를 해석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도, 공시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각각 수집, 비교하여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을 별도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과 구별하여 공시한 기업, 즉 연결감사실시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공시한 기업을 추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 감사인이 감사시간 투입과 감사보수 책정을 통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실시내용 정보가 구별되어 공시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였다.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연결감사수행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다는 점은 감사인의 적절한 정보제공현황을 나타내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학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을 추가로 공시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의 정보 제공유인에 기반

한 공시가 이루어진 것임을 실증함으로써, 감사실시내용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3절에서는 연구방법과 표본을 설정하고, 4절에서는 실증분석과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시한 기업의 감사인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제도 관련 연구와 감사공시정보, 감사인 대응 관련 연구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먼저, 국내 감사실시내용 공시제도 관련, 감사인이 투입한 감사시간은 2002년 회계연도부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드문 경우에 속한다. 때문에 국내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감사보수를 감사노력의 대응치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감사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더 내포하고 있어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5]. 감사인의 감사시간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감사인이 감사수행절차를 위해 투입한 노력 자체를 감사품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감사 품질에 대한 정의에 기반한다[6]. DeAngelo(1981)에 따르면, 감사품질은 감사인이 피감사기업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할 확률과 이러한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확률로 정의하는데, 감사인이 감사수행절차를 위해 투입한 시간이 많을수록 부정 또는 오류를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7]. 예를 들어, Caramanis and Lennox(2008)은 그리스 기업의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시간과 재량적발생액의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감사인의 감사투입노력이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감사시간 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보 이용자들의 상세한 감사실시정보에 대한 제공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세한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정보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해당 공시는 작성책임이 감사인에게 있으며, 감사에 투입한 인원, 감사에 투입한 시간,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박경진외(2016)은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당국, 외부정보이용자, 회계법인이 대체적으로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감사실시내용 공시를 통해 타 기업, 타 감사인과의 비교가 가능해질 것임을 가장 유용성이 큰 정보제공유인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보수 결정에의 있어서의 활용성이었다.

다만,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정보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유용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2]. 이는 별도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시간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하라는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주장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의 시행세칙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투입시간을 감사인이 다르게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인원수 및 감사시간을 추가하여 반영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감사절차 수행 시,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되므로[8], 추가적으로 연결감사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은 감사인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감사공시정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감사보수 공시정보가 피감사기업의 영업위험에 대한 선행지표를 나타낼 수 있어 유용하며[9][10], 감사보고서 상 업무처리정보가 공시된 경우 감사인의 소송위험이 낮아질 수

있으며[11], 중간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뢰성이 높아짐[12]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이 감사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는 경우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모두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감사공시정보에 대해 감사인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는 다소 드물다[3][4][13-15]. Dye(1991)에 따르면 감사인이 받는 감사보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감사인의 준지대(quasi-rents)가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감사인은 이를 취할 수 없어 감사인이 초도감사시 감사보수를 적게 받으면서 수입하는 현상이 줄어든다고 하였고, Craswell and Francis(1999)는 호주기업을 통해 감사보수가 공시된 시점 이후에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줄어들음을 보임으로써 이를 실증하였다. 오광욱과 배성호(2015)는 한국채택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감사인에게 추가적인 감사시간의 투입을 가져왔으나 상응하는 감사보수의 상승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이에 따른 공시범위 확대, 복잡성의 증대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투입노력 증가로 해석하였다. 또한, 정남철과 정석우(2019)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은 오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감사보고서에 보고된 감사시간과 피감사기업이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감사시간이 불일치할수록 내부통제위험이 커지고 감사품질이 악화됨을 주장하였다. 이는 사업보서에 공시된 감사시간 정보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며[15], 감사보고서에 보고하는 감사시간 정보에 대해 감사인은 시스템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오류없는 공시정보를 제공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감사인이 별도로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의 감사실시정보와 감사인의 대응을 통해 공시정보의 유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시한 기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에 각기 다른 감사실시내용을 공시한 원인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감사인이 외감법 시행세칙에 기반하여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으로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인원수 및 감사시간을 추가하여 반영한 경우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가 같이 외부에 공시되므로 외부공시일자로는 정확히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추론컨대, 일반적인 감사절차 수행 시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되므로[8], 추가적으로 연결감사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연결감사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은 감사인이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1][2], 이 경우 정보제공자로서의 감사인이 연결감사실시내용을 구별하여 공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신뢰성 확보 유인[11][12], 타 감사인 또는 타 감사기업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기대, 감사보수에 대한 정당화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2][4].

둘째, 감사인이 외감법 시행세칙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이다. 감사인이 규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를 일치하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함을 제시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이지만, 감사시간 집계오류가 발생하여 서로 어긋난 내용이 입력되거나, 단순 입력 실수로 인해 서로 다른 정보가 공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사인이 작성한 예는 아니지만, 기업이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시간 정보에 상당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1][4][15]. 요약하면, 상기 제시한 원인은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에 투

표 1. 감사시간공시정보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대상	연구방법	기간	연구
감사시간공시 공시실태	공시정보수집, 설문조사	2001-2004	[15]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실태	공시정보수집, 회귀분석	2014	[1]
외부감사실시내용 유용성	설문조사	2014	[2]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감사시간 차이	회귀분석	2014-2016	[4]

입한 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유인에 기반할 가능성과 피감사기업에 대한 무관심한 감사인 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사인에 기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 공시가 감사인이 투입한 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유인에 기반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은 연결감사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사수행절차를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실시내용을 공시함으로써 타감사인과의 비교를 통해 피감사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거나, 계약한 감사보수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감사노력을 투입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으로, 피감사기업이 감사품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연결감사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공시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16]. Abbott et al.(2003)에 따르면 감사품질 요구수준이 높고 관여정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인은 적극적으로 감사계획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추가 공시기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관련성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피감사기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시스템이 미비한 감사인에 기반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감사인은 감사품질에 대한 달성수준이 낮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감사수행절차를 수행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감사인은 보수 프리미엄을 받는 반면[5],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감사인은 보수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연결재무제표 추가공시기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관련성은 음(-)의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실시내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실제로 연결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공시를 구별해서 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차이가 날 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실제 감사인의 투입노력이나 보수책정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감사인이 높은 수준의 감사노력 투입정보에 대해 공시한 경우에도 감사보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상기 제시

한 계약한 감사보수에 대한 정당화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2], 추가 노력에 대한 피감사기업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5]. 연결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모두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는 감사인이 연결실체 종속기업에 대한 감사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별도공시를 선택한 경우일 것이다. 다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오류 발생으로 공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감사인이 부담하는 법적 비용이나 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감사위험으로 책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감사보수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실시내용을 추가로 공시한 기업의 감사인 대응은 실증분석의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의 상반된 예측에 따라 가설을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

가설 1: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된 변수들을 포함하여 식(1)을 구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17].

$$\begin{aligned} LNAH(LNAFL)_{i,t} = & \beta_0 + \beta_1 * DIFFD_{i,t} \\ & + \beta_2 * SIZE_{i,t} + \beta_3 * LEV_{i,t} + \beta_4 * ROA_{i,t} + \beta_5 * REC_{i,t} \\ & + \beta_6 * GRW_{i,t} + \beta_7 * FOR_{i,t} + \beta_8 * LARGE_{i,t} \\ & + \beta_9 * LOSS_{i,t} + \beta_{10} * TN_{i,t} + \beta_{11} * BIGA_{i,t} \\ & + \beta_{12} * OPIN_{i,t} + IND + YEAR + \epsilon_{i,t} \end{aligned} \quad (1)$$

주요 종속변수는 당기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자연로

그값(LNAH)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LNAFL)을 설정한다. 감사보수를 차기값으로 설정한 이유는 당기 감사정보를 활용하여 차기 감사계약의 감사보수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요 관심변수는 연결재무제표 추가공시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DIFFD)이다. 연결재무제표 추가공시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정보제공유인 또는 감사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차별적인 감사시간 투입 또는 감사보수 책정 행태를 나타낸다면 DIFFD의 계수가 유의한 양(+) 또는 음(-)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는, 가설에서 제시하였던 여러 상황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기업특성과 감사인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Hay et al.(2006)을 메타분석을 통해 감사보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통상적으로 다수 사용된 통제변수들을 보고하였는데, 기업의 규모, 복잡성, 고유위험, 수익성, 차입구조, 소유구조, 산업, 감사인특성, 계속감사기간, 감사문제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도 Hay et al.(2006)의 구분에 기반하여 피감사기업의 규모와 관련한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SIZE), 복잡성과 산업특성과 관련한 산업더미(IND), 고유위험과 관련한 매출채권비율(REC), 매출액성장률(GRW), 수익성과 관련한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순손실여부(LOSS), 차입구조와 관련된 부채비율(LEV), 소유구조와 관련된 외국인지분율(FOR)과 최대주주지분율(LARGE)를 포함하였다.

또한, 감사인특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Big4 감사인여부(BIG4)를, 계속감사기간과 관련하여 2000년 기준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TN), 감사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의견(OPIN)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고정효과(YEAR)를 포함하였다.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양극단 1% 수준에서 윈저화(winsorizing)하였다. 또한, 표준편차를 계산함에 있어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18].

2. 표본

본 연구에서는 Fn-guide를 기반으로 2014에서 2016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 (1) 비금융업표본
- (2) 12월 결산표본
- (3)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모두 공시 표본
- (4)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표본

표본기간이 2014년부터인 이유는 외감법상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실시내용이 공시된 시점이 2014년부터이기 때문이며, 2017년 외감법의 전면 개정으로 회계감사환경이 큰 변화를 맞았고,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정보도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정보 등을 추가 공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에 표본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표본의 균일성을 위해 비금융업, 12월 결산기업으로 제한하였으며, 연구목적상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별도로 공시한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를 모두 공시한 표본, 즉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지배기업에 제한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그 외 기타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구할 수 없는 표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3개년도에 대해 총 3,414개의 기업-연도 표본이 선정되었으며 연도별 표본구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총 표본 중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추가공시된 표본은 255 기업-연도 표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전체표본의 약 7.5%가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을 구별하여 공시하고 있다는 현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전체 표본 분포는 비교적 균등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시내용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표본의 개수는 연도별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6년에도 약 5.0%의 기업이 이를 구별하여 공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표본 분포

회계연도	전체표본	추가공시표본	그외표본
2014	1,046	112	934
2015	1,121	81	1,040
2016	1,247	62	1,185
Total	3,414	255	3,159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에 대해 나타낸다. 주요 종속변수인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LNAH)의 평균은 7.082로 나타나고 있고, 차기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LNAFL)의 평균은 11.403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표본에서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추가로 공시한 표본(DIFFD)은 255개로 전체표본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본의 약 53% 정도가 Big4 감사인(BIG4)에게 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표본(OPIN)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 표본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종속기업들이 다소 존재하는 지배기업이라는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본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분석에서 DIFFD는 BIG4 감사인 여부(BIG4)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추가적인 기업특성과 감사인특성을 통제한 후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기업의 감사인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기술통계량

Variables	Mean	S.D.	25%	50%	75%
LNAH	7.082	0.656	6.633	6.933	7.390
LNAFL	11.403	0.669	10.985	11.248	11.695
DIFFD	0.075	0.263	0.000	0.000	0.000
SIZE	19.345	1.473	18.311	19.048	20.133
LEV	0.440	0.204	0.274	0.447	0.597
ROA	0.031	0.072	0.006	0.035	0.069
REC	0.180	0.106	0.103	0.159	0.238
GRW	0.073	0.350	-0.068	0.027	0.138
FOR	0.071	0.105	0.009	0.025	0.087
LARGE	0.389	0.164	0.260	0.381	0.503
LOSS	0.296	0.456	0.000	0.000	1.000
TN	1.565	0.794	1.099	1.792	2.197
BIG4	0.533	0.499	0.000	1.000	1.000
OPIN	0.003	0.057	0.000	0.000	0.000

Note: 변수정의, LNAH=당기 회계연도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LNAFL=차기 회계연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DIFFD=연결재무제표 추가공시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더미변수; SIZE=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LEV=부채총계/자산총계; ROA=당기순이익/자산총계; REC=매출채권/자산총계; GRW=매출액성장률; FOR=외국인지분율; LARGE=최대주주지분율; LOSS=당기순손실 발생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더미변수; TN=계속감사시간(2000년 기준); BIG4=BIG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더미변수; OPIN=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더미변수.

2. 회귀분석결과

[표 4]는 연구모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간 관련성을 제시한다. (1)열은 당기 감사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고, (2)열은 차기 감사보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DIFFD)은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LNAH)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차기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LNAFL)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열에서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DIFFD)의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계수는 0.071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 -value=3.19).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공시가 감사인이 투입한 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유인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인은 연결감사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사노력을 투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공시함으로써 타감사인과의 비교를 통해 피감사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 제공하거나, 피감사기업이 정보를 요구하여 계약한 감사보수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감사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열에서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DIFFD)의 감사보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한 관계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감사보수에 책정하는 감사위험의 측면에서, 연결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연결감사위험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행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즉, 이 결과는 감사인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험을 인지하고 이러한 과정 하에서 감사투입노력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보수프리미엄을 책정하는 행태가 아닌, 감사인의 정보 제공유인에 기반한 공시가 이루어진 것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내용에 대한 공시가 피감사기업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 요구에 맞추기 위해 공시된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감사정보에 대한 관심과 감사인 관여 정도에 따라 감사시간을 전략적으로 할당하는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변수명	(1) 종속변수: LNAH			(2) 종속변수: LNAFL		
	Coef.	t-stat	p-value	Coef.	t-stat	p-value
Intercept	0.432	3.19***	0.000	4.654	31.43***	0.000
DIFFD	0.071	3.02***	0.002	0.021	0.84	0.387
SIZE	0.331	50.32***	0.000	0.329	44.28***	0.000
LEV	0.167	4.42***	0.000	0.378	8.66***	0.000
ROA	-0.254	-2.24**	0.341	-0.634	-4.74***	0.010
REC	0.025	0.40	0.646	-0.074	-1.04	0.002
GRW	-0.041	-2.19**	0.053	-0.016	-0.80	0.651
FOR	0.183	2.61***	0.930	0.597	7.81***	0.000
LARGE	-0.224	-5.20***	0.000	-0.347	-7.44***	0.000
LOSS	0.075	4.28***	0.000	0.094	4.90***	0.000
TN	-0.037	-4.71***	0.000	-0.004	-0.46	0.843
BIG4	0.349	25.79***	0.000	0.213	14.07***	0.000
OPIN	0.245	1.83*	0.228	0.512	3.61***	0.000
Year & Ind fixed	Yes			Yes		
Number of Obs.	3,414			3,414		
Adjusted R-sq.	0.742			0.687		

Note: *,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two-tailed).

3. 추가분석결과

[표 5]는 BIG4와 Non-BIG4 감사인 표본을 구분한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감사인 규모가 큰 BIG4 감사인의 경우 Non-BIG4 감사인에 비해 인력채용과 교육수준이 우수하고, 위험관리시스템 등의 감사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며, 감사계획 및 위험평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9-21]. 이에 따르면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 간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에 대한 원인이나 유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른 감사인의 대응도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국내의 경우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BIG4 감사인으로 대표되며, 각각 미국의 4대 회계법인(PwC·KPMG·EY·Deloitte)과 연계되어 있다. [표 5]의 (1),(2)열은 감사시간, (3),(4)열은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1),(3)열은 BIG4 감사인 표본, (2),(4)열은 Non-BIG4 감사인 표본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BIG4와 Non-BIG4 표본 모두에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본문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BIG4 감사인의 경우 감사시스템이 우수하여 규정위반이나 오류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것임에 기반하는 경우, 추가분석의 결과는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오류에 기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감사기업의 요구에 의한 감사품질 제고에 따른 공시행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16], 감사인의 정보 제공유인에 대한 해석을 재확인한다.

표 5. BIG4와 Non-BIG4 감사인 표본을 구분한 추가분석

변수명	종속변수: LNAH		종속변수: LNAFL	
	(1)BIG4	(2)Non BIG4	(3)BIG4	(4)Non BIG4
Intercept	1.765*** (8.30)	0.528*** (3.10)	6.600*** (26.02)	4.434*** (24.30)
DIFFHD	0.050** (2.02)	0.166** (2.48)	0.006 (0.22)	0.087 (1.25)
Controls vars.	Yes	Yes	Yes	Yes
Year & Ind fixed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	1,595	1,819	1,595	1,819
Adjusted R-sq.	0.423	0.721	0.377	0.715

Note: *,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two-tailed).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분석으로 유가증권상장기업 표본과 코스닥상장기업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문에서 제시되었던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과 감사시간과의 유의한 양의 관계는 코스닥 표본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감사인이 자발적으로 감사노력투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유인이 클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추가분석으로, 추가공시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감사시간으로 연속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한 경우, 감사과정상의 복잡성, 영업위험, 연결감사위험과 관련된 추가 통제변수를 구성하는 경우, fixed-effects estimation이나 차분(change)변수를 이용하여 기업 내 측면(within firm)에서의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모두 본문의 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해 추가로 공시한 기업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살펴본 것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시간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결감사내용의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규정 미인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유용한 정보제공 유인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공시함으로써 타감사인과의 비교를 통해 피감사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 제공하거나, 피감사기업이 정보를 요구하여 계약한 감사보수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감사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 추가공시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감사보수에 책정하는 감사위험의 측면에서, 연결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연결감사위험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행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BIG4와 Non-BIG4 표본을 구분하여도 본문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BIG4 감사인이 규정위반이나 오류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것임에 기반하는 경우, 이 결과는 연결감사 추가공시가 감사인의 정보 제공유인에 기인한 것임을 재확인한다. 넷째, 연속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통제변수를 구성하는 경우, 차분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서 본문의 결과가 질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실시내용 정보가 구별되어 공시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유용한 정보제공유인을 실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학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헌점을 지닌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구별하여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이를 관측할 수 없다는 점, 실제로 규정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작성 후 연결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추가공시하는지에 대한 관측이 불가능한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된 외감법 규정과 제도정비로 인해 더욱 세심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신현걸, 정수진,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 분석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pp.223-253, 2016.
- [2] 박경진, 김기영, 송문섭,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정보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5호, pp.141-173, 2016.
- [3] 오광욱, 배성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과 외부감사비용: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와 감사인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4권, 제3호, pp.33-76, 2015.
- [4] 정남철, 정석우, “감사시간의 공시 불일치, 감사인 대응 그리고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44권, 제4호, pp.129-173, 2019.
- [5] M. DeFond and J. Zhang,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58, No.2-3, pp.275-326, 2014.
- [6] L. E. DeAngelo,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 No.3, pp.183-199, 1981.
- [7] C. Caramanis and C. Lennox,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45, No.1, pp.116-138, 2008.

- [8] 지현미, 박홍조, 정태범,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 시 타감사인 활용이 연결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감사연구, 제51권, pp.1-24, 2010.
- [9] J. D. Stanley, “Is the Audit Fee Disclosure a Leading Indicator of Clients’ Business Risk?,”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30, No.3, pp.157-179, 2011.
- [10] P. Hribar, T. Kravet, and R. Wilson, “A New Measure of Accounting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19, No.1, pp.506-538, 2014.
- [11] S. Mong and P. Roebuck, “Effect of Audit Report Disclosure on Auditor Litigation Risk,” Accounting & Finance, Vol.45, No.1, pp.145-169, 2005.
- [12] T. P. Holt and T. DeZoort, “The Effects of Internal Audit Report Disclosure on Investor Confidence and Investment Deci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Vol.13, No.1, pp.61-77, 2009.
- [13] R. A. Dye, “Informationally Motivated Auditor Replac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14, No.4, pp.347-374, 1991.
- [14] A. T. Craswell and J. R. Francis, “Pricing Initial Audit Engagements: A Test of Competing Theories,” The Accounting Review, Vol.74, No.2, pp.201-216, 1999.
- [15] 정태범, 박희우, “감사시간 공시의 적정성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pp.57-83, 2006.
- [16] L. J. Abbott, S. Parker, G. F. Peters, and K. Raghunandan,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22, No.2, pp.17-32, 2003.
- [17] D. Hay, W. R. Knechel, and N. Wong, “Audit Fees: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Supply and Demand Attribut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23, No.1, pp.141-191, 2006.
- [18] H. White,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pp.817-838, 1980.
- [19] H. Blokdijk, F. Driehuisen, D. A. Simunic, and M. T. Stein, “An Analysis of Cross-sectional Differences in Big and Non-big Public Accounting Firms’ Audit Program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25, No.1, pp.27-48, 2006.
- [20] 이영한, 김태동, 김성환, “Big4 감사인 여부와 계속 감사기간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pp.33-62, 2010.
- [21] Y. Zhao, J. C. Bedard, and R. Hoitash, “SOX 404, Auditor Effort, and the Prevention of Financial Report Misstatement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36, No.4, pp.151-177, 2017.

저자 소개

윤 용 석(Yongsuk Yun)

정희원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14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회계학)
- 201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회계학)
- 2019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공시정보, 재무회계, 회계감사